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더 센트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365-2106(내선1번)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10.25.)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 도과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19.10.11.(금)	26.02.13.(금)	26.02.19.(목)	26.02.24.(화)	26.02.24.(화)~26.03.06.(금)	26.04.03.(금)

1

공통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본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 현재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현장 주변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안내를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또한 잔금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변경·취소·옵션추가 불가, 승계 거부 시 계약불가)
- 본 주택은 이미 공사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에 대하여 취소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부 세대는 샘플하우스로 사용된 세대이므로, 청약 당첨 후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세대 확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확인 없이 계약을 완료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를 신청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하며,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13.(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3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1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78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2차'에서 현재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더 센트로'로 단지명이 변경되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2.19.(목)	26.02.24.(화)	26.02.24.(화)~03.06.(금)	26.04.03.(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길 4, 8층(분양관리팀)	■ 계약장소 추후 별도안내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발표일(2019.10.25.)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 도과하였습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0(루원시티 대성베르힐 더 센트로)

■ 공급규모 : 지하 5층, 지상49층, 6개동 총 1,059세대 중 잔여 9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잔금납부 후 즉시 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m²,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민영 주택	2026910039	01	084.8036A	84A	1	204	4402
		02	084.6059B	84B	4	201	201
						203	201
						203	1201
						204	201
		03	159.0584A	159A	2	204	4803
						205	3901
		04	159.2562B	159B	1	202	4401
05	159.1851C	159C	1	201	3804		
합 계					9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	동호별	층구분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30일 이내	계약일~60일 이내
084.8036A	84A	1	204동 (2호라인)	40층이상	125,468,279	329,531,721	-	455,000,000	45,500,000	91,000,000	318,500,000
084.6059B	84B	1	201동 (1호라인)	2층	125,175,779	287,824,221	-	413,000,000	41,300,000	82,600,000	289,100,000
		2	203동, 204동 (1호라인)	2층	125,175,779	286,824,221	-	412,000,000	41,200,000	82,400,000	288,400,000
		1	203동 (1호라인)	10~14층	125,175,779	309,824,221	-	435,000,000	43,500,000	87,000,000	304,500,000
159.0584A	159A	1	204동 (3호라인)	최상층	235,329,441	544,245,963	54,424,596	834,000,000	83,400,000	166,800,000	583,800,000
		1	205동 (1호라인)	최상층	235,329,441	531,518,690	53,151,869	820,000,000	82,000,000	164,000,000	574,000,000
159.2562B	159B	1	202동 (1호라인)	최상층	235,622,089	538,525,374	53,852,537	828,000,000	82,800,000	165,600,000	579,600,000
159.1851C	159C	1	201동 (4호라인)	최상층	235,516,896	543,166,458	54,316,646	833,000,000	83,300,000	166,600,000	583,1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계약일~30일 이내	계약일~60일 이내
84A	13,500,000	1,350,000	2,700,000	10,800,000
84B	14,500,000	1,450,000	2,900,000	11,600,000
159A	20,000,000	2,000,000	4,000,000	16,000,000
159B	21,000,000	2,100,000	4,200,000	16,800,000
159C	21,000,000	2,100,000	4,200,000	16,80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및 제공품목 현황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타입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내역	
				총 합계	계약시	계약일~30일 이내	계약일~60일 이내	품목	공급금액
084.8036A	84A	204	4402	10,300,000	1,030,000	2,060,000	7,21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600,000
								현관중문	1,0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7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1,500,000
								사각싱크볼	1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6,400,000
084.6059B	84B	201	201	9,300,000	930,000	1,860,000	6,51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600,000
								현관중문	6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5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1,100,000
								사각싱크볼	1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6,400,000
		203	201	9,300,000	930,000	1,860,000	6,51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600,000
								현관중문	6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5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1,100,000
								사각싱크볼	1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6,400,000
		203	1201	9,300,000	930,000	1,860,000	6,51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600,000
								현관중문	6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5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1,100,000
								사각싱크볼	1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6,400,000
		204	201	9,300,000	930,000	1,860,000	6,51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600,000
								현관중문	6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5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1,100,000
								사각싱크볼	1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6,400,000

159.0584A	159A	204	4803	19,600,000	1,960,000	3,920,000	13,72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1,200,000
								현관중문	2,0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1,3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2,800,000
								사각싱크볼	3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12,000,000
		205	3901	19,600,000	1,960,000	3,920,000	13,72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1,200,000
								현관중문	2,0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1,3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2,800,000
								사각싱크볼	300,000
159.2562B	159B	202	4401	16,300,000	1,630,000	3,260,000	11,41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12,00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1,200,000
								현관중문	1,2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8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1,800,000
								사각싱크볼	300,000
159.1851C	159C	201	3804	19,600,000	1,960,000	3,920,000	13,72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11,000,000
								전기하이브리드쿱탑	1,200,000
								현관중문	2,000,000
								싱크대상판, 아일랜드상판 엔지니어스톤	1,300,000
								주방벽 엔지니어스톤	2,800,000
								사각싱크볼	300,000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12,000,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해당 동호수에 설치된 품목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하며, 해당 품목의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공급계약의 체결이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103-813406	디에스종합건설(주)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유상옵션금	우리은행	1005-003-813411	디에스종합건설(주)

※ 공급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홍길동'으로 기재, 착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24.(화) ~ 2026.03.05.(목)(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2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04.03.(금)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발급기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잔금대출 알선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없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일정 : **추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입장 시간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예비순번별 순서대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선정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입주예정일 : 2026년 06월 예정(잔금납부 후 즉시 입주가능)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200111-035180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길 4, 5층(신용동)
시공회사	대성베르힐건설(주)	200111-014496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울 233-12, 상가동 201호

- 문의전화 : ☎062-365-2106 (내선1번) [상담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10.11.) 및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더 센트로 홈페이지(<https://www.verthill.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기재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